

수원지방법원 2022. 4. 27 선고 2020가단576337(본소), 2021가단554143(반소) 판결

[배당이의 ·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흥

담당변호사 양효중, 유상호

피고(반소원고)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한신

변 론 종 결 2022. 3. 30.

판 결 선 고 2022. 4. 27.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6. 1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수원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12. 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17,443,178원을 61,662,356원으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한 배당액 0원을 55,780,822원으로 각 경정한다.

반소 : 원고와 B 사이에 2018. 3. 2. 체결된 D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을 취소한다.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3. 29. E를 운영하는 D과 보증기한 2018. 3. 30.까지, 보증금액 27,000,000원으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제1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및 보증기한 2018. 3. 30.까지, 보증금액 36,000,000원으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제2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D의 배우자 B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D이 피고에게 부담하게 될 사전구상금 등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후 제1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금액이 25,500,000원으로, 제2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금액이 34,000,000원으로 각 감축되었다. D은 그 무렵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을 대출받았다.

나. 피고는 2017. 6. 14. D과 보증기한 2018. 6. 14.까지, 보증금액 100,000,000원으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제3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추가로 체결하였고, 위 약정에 기하여 재차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을 대출받았다.

다. D과 거래하면서 물품을 공급하던 원고는 2018. 3. 2. D과 사이에, 2018. 2. 28.까지 발생한 D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액이 50,000,000원임을 확인하고, 2018. 10. 30.까지 위 채무를 변제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라. 피고는 2018. 3. 7.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D이 제1, 2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받은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니 피고에게 대위변제를 청구할 예정이라는

신용보증사고통지를 받게 되었고, 이에 따라 2018. 3. 20. 제1, 2신용보증약정의 연대보증인인 B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각 부동산 등을 가압류하였다.

마. 이에 D과 B은 2018. 4. 6. 피고에게 제1, 2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을 2019. 3. 29.로 연장하는 보증조건변경신청을 하였고, 위 신청에 따라 피고는 2018. 4. 9. 위 각 보증기한을 2019. 3. 29.로 연기하고, 같은 날 중소기업은행에 위 보증기한 연기를 통지하였다.

바. 그러나 D은 2018. 6. 12. 또다시 피고에게 제3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을 2019. 6. 14.로 연장하는 보증조건변경신청을 하였고, 아울러 B은 2018. 6. 14. 피고에게 제1, 2, 3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금액 합계 159,500,000원의 구상채무 전부를 연대보증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B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91,400,000원의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6. 14. 위 보증기한을 2019. 6. 14.로 연기하고, 이를 중소기업은행에 통지하였다.

사. B은 2018. 6. 15.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각 부동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B의 16.5/238 지분,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위의 단층주택 49.50㎡, 부속건물 단층창고 15.3㎡(이하 ‘별도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당시 위 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각 부동산과 별도 주택에는 중소기업은행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마쳐져 있었다.

아. 그러나 또다시 D에 대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결국 피고는 2019. 1. 30. 중소기업은행에 D의 대출금 합계 160,535,22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자. 이후 중소기업은행이 2019. 2. 14. 수원지방법원 C로 위 선순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위 사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자, 2019. 3. 29.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권으로 배당요구를 하였다. 이후 2020. 11. 11. 위 각 부동산이 매각되어 2020. 12. 8.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3순위로 117,443,178원을 배당한다는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원고는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0. 12. 8. 열린 위 경매사건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위 배당액 중 55,780,822원에 대한 이익을 진술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4, 9, 10, 11 내지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B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칠 당시 B은 채무초과 상태였고 피고도 이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B의 채권자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초하여 피고 앞으로 배당된 배당금 중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무원리금에 상당하는 55,780,822원에 대한 경정을 구한다.

나.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한 2019. 3. 29.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인데 원고의 이 사건 본소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나서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한다.
- 2)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참조).
- 3) 살피건대, 적어도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을 당시에는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이므로, 그 원인이 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사실도 알게 되었다고 볼 수는 있으나,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B이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다거나, 위 계약으로 채무초과 상태가 초래되었다는 등의 사해행위의 취소원인까지도 원고가

알았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달리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채권자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

가)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권의 변제기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이후에 도래하므로 위 공정증서에 기초한 채권은 피보전권리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미 성립한 채권이면 그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사해행위의 취소를 위한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B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되기 전 이 사건 공정증서로 성립하였다 할 것이므로, 비록 그 연대보증채무의 변제기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도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B의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보증기간이 2021. 3. 2.까지이므로, 그 이후 원고는 B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자가 아니어서 피보전채권이 없다고도 주장하나, 위 보증기간은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주채무의 발생기간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보증채무의 존속기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데(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8다42231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르더라도 이미 위 보증기간 내에 주채무인 D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발생한 상태이므로, 원고는 B에게 연대보증채권을 갖는다 할 것이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재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채무자가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그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그러한 채무자의

담보제공행위는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이때 담보제공행위가 사업계속 추진을 위한 신규자금 유통을 위한 행위로서 사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는, 행위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율, 무자력의 정도, 그 행위가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불가피하고 유효적절한 수단이었는지, 담보제공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실제 자금이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사업의 계속을 위해 사용되어 채무자가 변제자력을 갖게 되었는지,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칠 의사를 가지고 행한 것은 아닌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7다264072, 264089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기초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와 D 사이의 신용보증약정은 D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사업상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목적으로 체결되었던 점, ② 피고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위 대출금의 대위변제를 청구할 예정이라는 통지를 받았음에도, D의 신청에 따라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을 연장해 주었던 것은, D이 위 대출금의 변제유예를 통하여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여 이를 수용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③ 만약 피고가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을 연장해 주지 않았더라면 D과 D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B은 그 즉시 위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피고로부터 구상청구를 당하게 되어, 사업자금과 책임재산을 모두 위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인데, 피고가 위와 같이 보증기한을 연장해 주어 일정기간 위 대출금의 변제가 유예됨으로써 사실상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게 된 점, ④ D이 위 대출금 변제유예를 통해 사업을 계속하여 변제자력을 회복하였더라면 원고도 D으로부터 물품대금채무를 변제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을 연장하고자 B이 피고에게 담보를 제공한 행위 즉,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D이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부득이하게 한 조치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원인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B이 D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50,000,000원을 연대보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은 B의 채무초과를 초래하거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이므로, B에 대한 사전구상권 연대보증채권자로서 피고는 위 연대보증계약을 취소한다.

나. 채무초과 여부

1)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B이 제1, 2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의 D에 대한 합계 59,500,000원의 구상채무의 연대보증인인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갑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B은 D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각 부동산 및 별도 주택에 관하여, 중소기업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합계 144,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을, F 앞으로 채권최고액 합계 6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해준 사실, B은 그 무렵 G 주식회사에 5,866,990원, H 주식회사에 4,153,349원의 각 신용카드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B의 소극재산은 합계 287,520,339원(= 59,500,000원 + 144,000,000원 + 65,000,000원 + 5,866,990원 + 4,153,349원)이 된다. 피고는 B에 대한 부가가치세 38,713,800원도 소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B이 위 부가가치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한편, 갑 제3호증, 을 제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B은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각 부동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B의 16.5/238 지분, 별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9. 2. 26. 이루어진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각 부동산, 별도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결과 그 가액이 417,717,500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에게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B의 16.5/238 지분을 제외하고도 417,717,500원 상당의 적극재산이 있었으므로, B은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적어도 위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한 130,197,161원(= 417,717,500원 - 287,520,339원)을

초과하는 책임재산이 있었다. 따라서 B이 원고에게 D의 물품대금 50,000,000원을 연대보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채무초과상태를 초래하거나 심화시켰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피고의 반소 청구원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진

[별지]

목 록

1. 화성시 I 대 660㎡
2. 화성시 J 전 238㎡
3. 화성시 I K동호 연와조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창고시설 1층 100㎡. -끝-

